

참고2

기술사업화 패키지

- **(사업목적)** 정부 R&D 등으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매출 증가 등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화 지원 강화
- **(지원대상)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사업화할 기술을 '23년 1월 1일 이후 개발 완료하거나 이전받은 기업

트랙	지원대상
정부 R&D 우수과제	18개 정부부처의 R&D 사업으로 지원받은 R&D 과제로서, 지원한 소관 정부부처가 해당 과제를 우수과제로 인정하여 중기부로 추천한 기업
기술거래플랫폼 연계	아래 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① 스마트테크브리지(중소벤처기업부·기술보증기금 운영) ② IP-Market(지식재산처·한국발명진흥회 운영)
규제혁신R&D 연계	정부 R&D(중앙, 지방)를 지원받고,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이력이 있는 기업
R&D 수행 창업기업	정부 R&D를 수행한 창업기업(과제종료일 기준)이거나 정부 R&D를 수행한 연구자(연구책임자로 수행)가 창업한 창업기업

- **(지원내용)** 사업화 전담기관에서 지원 대상 기업에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여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제공
 - 수출, 마케팅, 브랜드, 해외인증 등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화 서비스*를 메뉴판 방식으로 구성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
- * ▲ 수출바우처, ▲ 혁신바우처, ▲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 서비스와 ▲ 사업화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한 민간 서비스
- **(지원조건)** 최대 1~1.5억원의 R&D 후속 사업화 보조금 지급, 국고 지원 보조율은 '25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 ~ 60% 차등 적용
 - 국고지원 보조율에 따른 기업 부담액의 90%까지 현물납부 가능

< '25년 매출액 구간별 국고 보조율 >

지원 기간	지원 한도	국고 보조율('25년 매출액 기준)		
		100억원 미만	100 ~ 300억원	300억원 이상
6개월(7월 ~ 12월)	1.5억 원 이내	60%	50%	40%